

을 해제하고자 한 것으로 구역 변경안에는 동의의견임.

※변경구역에 대한 도면을 보면, 구역 해제지역에 조합주택을 건설하여 존치지역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하나, 존치지역이 지형상 장방형을 이루고 있고, 고지대에 아파트를 건축할 시 스카이라인 조정 등 다소 어려운 문제점이 예상되어 사업시행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됨.

5. 심사결과

보 류

의안 번호	63
----------	----

1. 건 명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

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요지

○위 치 : 서초구 양재동 12 일대 및 서초동 1366 일대

○내 용

·용도지역변경 : 일반주거지역→일반상업지역 (43,230㎡)

·용도지구지정 : 도시설계지구(43,230㎡)

·주민의견 청취결과

—양재동 24 일대 상업지역 추가지정 요망(미반영)

—서초동 1365-16 일대 상업지역 추가지정 요망(미반영)

—서초동 1360-45 일대 상업지역 추가지정 요망(미반영)

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

○본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의 건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서초구 양재지구 중심지역인 양재동 12 일대 및 서초동 1366 일대 43,230㎡의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면서, 아울러 같은 지역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,

○이 지역 양재중심지구를 육성 발전시키기

위한 상업지역으로 변경은 타당한 변경안으로 사료되며 특히, 이 지역에 대한 도시미관과 토지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도시설계지구 지정은 인접지역과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제출한 지구지정안에 동의의견임.

5. 심사결과

보 류

의안 번호	64
----------	----

1. 건 명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

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요지

○위 치 : 서초구 방배동 444-4 일대

○내 용

·용도지역변경 : 일반주거지역→일반상업지역 (25,560㎡)

·용도지구지정 : 도시설계지구(25,560㎡)

·주민 의견청취 결과 : 없음.

—방배2동 452-1 일대 상업지역 추가지정 요망(미반영)

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

○서초구 방배동 444-4 일대 남현지구 중심지역에 대한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결정안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합당하여 시의 변경결정안에 동의의견이며,

○또 이 지역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과 함께 남현지구 중심지를 중심기능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서 타당한 지정안으로 사료됨.

5. 심사결과

보 류

의안 번호	65
----------	----